위드의원 · 대구대학교 간호학과

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서

대구대학교 간호대학(이하 '학교'라 한다)와 위드의원(이하 '기관'이라 한다)는 간호학과 학생의 현장 실습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약정한다.

제 1조 (목적)본 실습 협약은 '기관'과 '학교'의 상호간 실습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협약기간) 본 계약은 2026년 8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.

제 3조 (상호협의조정) 실습 인원, 기간, 부서 등 실습에 관련된 제반 사항은 '학교'의 요청에 대하여 '기관'이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지며 협의된 일정에 따라 실습을 진행한다.

제 4조 (의무와 권리) '기관'과 '학교'는 간호학생 실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.

① '기관'은 간호학생의 현장 실습을 지도하며, 실습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'학교'에 통보한다.

② '학교'는 학생의 현장 실습 기간 중 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나 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고 해결한다.

③ '학교'는 학생이 학교 행사 등으로 실습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 '기관'에 미리 통보한다.

④ '기관'은 감염병의 유행 등 필요 시 '학교'에 학생의 면역력(결핵 포함)이 확보되었음을 요구할 수 있다. 만약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학생과 그의 소속 학교가 진다.

제 5조 (배상) '학교'는 실습생의 부주의로 물품의 분실, 파손 등 재산 상 손해를 입힌 경우 '기관'에게 배상하여야 한다.

제 6조 (기밀유지) '기관'과 '학교'는 실습 중 취득한 기관과 대상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협약 기간 또는 종결 후에도 제 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
제 7조 (안전관리) '학교'는 학생들의 실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하며, 실습 중 재해나 사고를 입은 경우를 대비하여 학생이 실습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8조 (실습비) '기관'은 '학교'의 실습기간 동안 별도의 실습비를 요청하지 않는다.

제 9조 (해석)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위의 협약사항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'기관'과 '학교'의 대표자가 각각 1부씩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6 년 7 월 31일

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50길
대구대학교
총장 윤 재 웅

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41
위드의원
이사장 정민철